

제24장 최종규정

제24.1조 부속서, 부록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24.2조 개정

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.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개정은 당사국들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모든 당사국이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.

제24.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

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, 당사국들은 제 24.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24.4조 가입

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, 그 국가나 국가집단과 공동위원회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. 가입은 모든 당사국과 가입하는 국가나 국가집단이 각자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모든 당사국과 가입하는 국가나 국가집단이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.

제24.5조 발효

1. 이 협정은 한국과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한국과 그 중미 공화국이 그들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다른 쪽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그들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2.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, 각 당사국은 그 밖의 모든 당사국들에 서면으로 동시에 통보한다.

제24.6조 철회 및 종료

1. 어떠한 당사국도 모든 당사국에 서면통보의 수단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철회할

수 있다.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철회는 모든 당사국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8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.

2. 중미 공화국의 한 국가가 철회한다면, 이 협정은 남아있는 당사국들에 효력이 유지된다. 한국이 철회한다면, 이 협정은 제1항에 명시한 날에 종료된다.

제24.7조 유보 및 해석적 선언

이 협정은 일방적인 유보나 일방적인 해석적 선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제24.8조 정본

이 협정의 한국어본, 스페인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. 불일치가 있는 경우, 당사국들은 협정문의 영어본을 기본으로 불일치를 해결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18년 2월 21일 서울에서 한국어,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엘살바도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온두라스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파나마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